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9누11142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구단12689 판결
변론 종결	2019. 12. 18.
판결 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7. [redacted]시 B 대 1,824㎡ 토지와 그 지상 벽돌구조 기타지붕 2층 동·식물관련시설 1층 94.62㎡, 2층 32.64㎡ 건물(도로명 주소는 '거제시 F'이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8. 4. 17. 피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9,205,000원, 지방교육세 789,0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526,000원을 합한 10,52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경감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① 원고의 창업일은 최초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2014. 3. 14.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18. 4. 5.이고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날은 2018. 1. 17.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위 조항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창업일로부터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것)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당초 면세사업자로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태 및 업종의 변경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제조업을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추가하거나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4.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사업인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2016. 10. 25. 새롭게 축산물가공업을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6. 10. 25.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하므로, 그 경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12,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5, 갑 제14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2,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내용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거제시 F"으로 하여 2014. 3. 14.경 등록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호를 "G", 상호를 "C", 대표자를 원고, 개업연월일을 "2014년 3월 19일",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식육판매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이하 '정육점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한편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2014. 3. 3.경 등록번호를 "H", 상호를 "D", 대표자를 "I", 개업연월일을 "2013년 12월 12일", 업태를 "음식", 종목을 "일반음식"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하 '식당 사업자등록'이라 한다)과 함께 업종을 "일반음식점", 영업의 형태를 "식육(숯불구이)", 업소명을 "D", 영업자를 "I"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각각 마쳐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마친 무렵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정육점 영업을 함과 동시에 I 명의의 식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식육식당 영업을 같이 하였다. 원고는 식육식당 영업 과정에서 식사 메뉴로 '한우곰탕'을 판매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위 정육점 사업자등록 무렵 곰탕을 끓이는 기계 2대가량을 위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정육점 영업과 식육식당 영업을 하던 중 2016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곰탕·갈비탕 등을 끓이는 기계 8~10대가량을 위 사업장 소재지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끓인 곰탕·갈비탕 등을 포장하는 기계도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로 기계로 끓인 곰탕·갈비탕 등을 팩에 담아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위 각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정육점 영업과 식육식당 영업을 할 당시 위 사업장 소재지의 모습은 별지 '설비 설치 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를 완료하고 난 직후 위 사업장 소재지의 모습은 별지 '설비 설치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위 사업장 소재지의 모습은 별지 '부동산 취득 무렵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3) 원고는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난 후 2016. 10. 25. 정육점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정육점 사업자등록에서와 동일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개업연월일을 사용하여 등록번호를 "J", 주업종을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식육판매업", 부업종을 업태 "제조업", 종목 "축산물(식육)가공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겸용' 사업자등록(이하 '현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현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2017. 7. 21. 주업종을 업태 "제조업", 종목 "축산물(식육)가공업", 부업종을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식육판매업"으로 바꾸는 변경 등록을 하였고, 2017. 7. 27. 상호를 "D"로 바꾸는 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2017. 10. 10. 위와 같이 변경 등록한 부업종을 삭제하는 변경 등록을 하였고, 2017. 11. 6. 상호를 "E"로 바꾸는 변경 등록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I 명의의 식당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루어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에 관해서는, 2017. 3. 22. 영업자를 "K"으로, 상호를 "L"으로 각각 변경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7. 9. 20. "자진폐업, 사무실로 변경"을 폐업 사유로 하는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다.

4) 원고의 현 사업자등록에 관한 2016. 10. 25.부터 2018.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현재 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기계로 끓인 곰탕 · 갈비탕 등을 팩에 담아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만을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경 이후로는 영업의 대상, 즉 포장된 곰탕 · 갈비탕 등을 판매하는 상대방은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아닌 M조합 · N조합이나 마트 등 유통업자이다. 그리고 그 사업장 소재지의 현재 모습은 별지 '현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16/10/25	2016/12/31	19,492,894	904,910	18,587,984	86,154
2017/01/01	2017/06/30	56,636,854	56,636,854	0	4,720,518
2017/07/01	2017/12/31	218,100,371	218,100,371	0	4,279,583
2018/01/01	2018/06/30	188,725,556	188,725,556	0	8,468,464
		어 화	여 백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개인이 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어 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6호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경감된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머지 각 호는 피고의 처분 사유와 무관하므로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현 사업자등록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또는 갑 제5,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4.경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육점 영업과 식육식당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6. 10. 25. 위 각 영업을 폐업하고 현 사업자등록을 바탕으로 영업체를 새로이 만들어 기계로 끓인 곰탕 · 갈비탕 등을 팩에 담아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업의 개시는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밖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서 원고가 개시한 위와 같은 포장 판매 사업이 축산물(식육)가공업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이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해당 영업체의 소재지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원고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등록일인 2016. 10. 25.부터 4년 이내인 2018. 4. 17.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원고의 주관적 의사 측면에서, ① 원고는 정육점 영업과 식육식당 영업을 같이 하던 중 식육식당 영업에 필요한 수준의 4~5배에 달하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식육식당 영업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설비도 새로이 설치하였던 점, ② 원고가 정육점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존에 영위하던 정육점 영업과 식육식당 영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설비를 새로이 갖추어 위 각 영업과 별개의 다른 영업을 시작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0. 25. 정육점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 신고 및 현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동일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개업연월일을 사용하였고, 특히 현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을 정육점 사업자등록에서와 동일하게 "도매 및 소매업(식육판매업)"으로 하고 "제조업{축산물(식육)가공업}"은 부업종으로 하였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의사는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할 의사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할 의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률요건으로서 사업 종류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과 실제의 사업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선고 2009두3729 판결의 취지 참조) 사업의 실질을 고려함이 없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원고의 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 등과 세무서 직원이 나눈 대화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데에는 원고의 무지나 착오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원고의 의사에 관한 평가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사업의 객관적 실질 측면에서,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비를 새로 갖추고 현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에 영위하던 정육점 영업·식육식당 영업과 그 후에 영위하기 시작한 기계로 끓인 곰탕·갈비탕 등을 팩에 담아 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피고 스스로도 각각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하듯이 명백히 다른 영업인 점, ② 나아가 정육점 영업·식육식당 영업을 하던 당시의 사업장 모습과 위와 같은 포장 판매 사업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사업장 모습은 구비된 설비의 종류(전자는 주로 식당 손님들이 사용할 식탁과 의자, 판매용·식사용 정육 등을 보관할 냉장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후자는 곰탕 제조용 기계와 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주된 형태(전자는 손님들에 대한 정육 판매나 식사 조리 그 밖의 서비스 제공이 주된 작업으로 보이고, 후자는 원재료를 이용한 곰탕 등의 제조와 포장이 주된 작업으로 보인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별지 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도 명백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 점, ③ 정육점 영업·식육식당 영업은 주로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반면, 위 포장 판매 사업은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아닌 M조합·N조합 등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영업의 상대방을 명백히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에 영위하던 정육점 영업·식육식당 영업과는 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별되는 별개의 다른 영업으로서 위와 같은 포장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 명의의 식당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루어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에 관하여 2017. 9. 20.에 이르러서야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현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2016년 2기의 매출 내역 가운데에는 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로써 표상되는 식당(D, L)에 대하여 합계 12,707,060원(2,207,060원 + 10,5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위 2016년 2기의 매출 내역 중에는 면세사업인 정육점 영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출액 18,587,984원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2016. 10. 25. 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와 같은 포장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정육점 영업 또는 식육식당 영업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포장 판매 사업은 기존의 정육점 영업이나 식육식당 영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추가나 확장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의 개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률요건으로서 사업 종류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과 실제의 사업 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일관할 때, 단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에 관한 폐업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상 원고가 그 폐업 신고 시까지 식육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지적하는 식당(D, L)에 대한 매출 발생 내역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 따르더라도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를 거래 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내역만으로 원고가 2016. 10. 25. 이후에도 정육점 영업 또는 식육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지적하는 면세분 매출액 18,587,984원이 원고의 현 사업자등록에 관한 2016년 2기의 매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정육점 사업자등록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이나 식당 사업자등록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이 2016년 9월 또는 10월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3 참조)을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육점 영업 · 식육식당 영업을 폐업하고 앞서 본 포장 판매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교체를 소홀히 하여 일시적으로 실질과 다르게 면세분 매출액이 신고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시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6. 10. 25. 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육점 영업 또는 식육식당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를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영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다른 영업으로서 포장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뒤집고 이를 단순한 사업의 추가나 확장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판사 안좌진

판사 서범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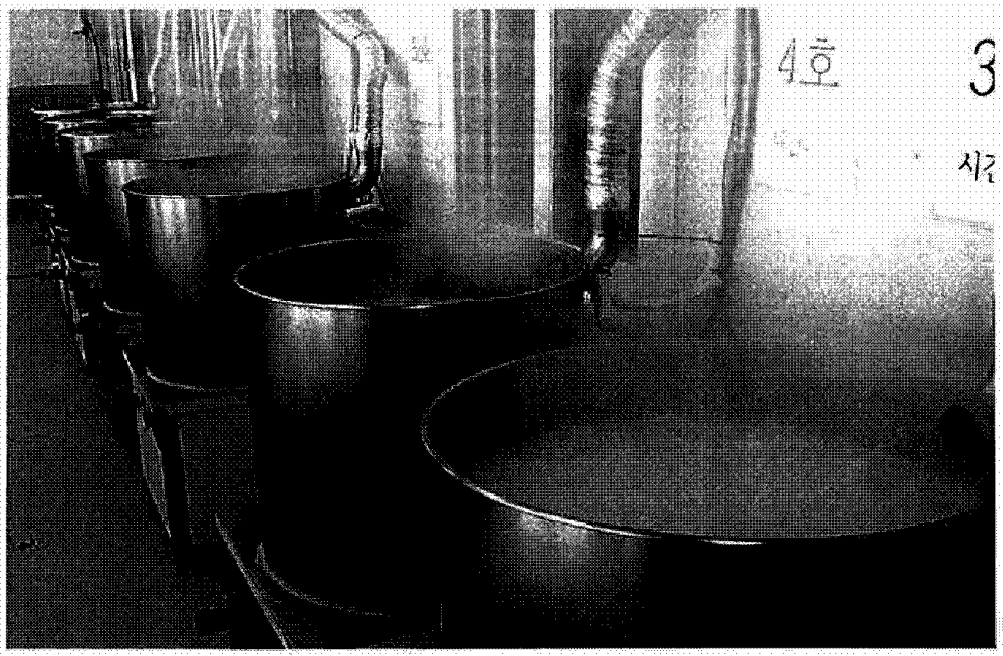
설비 설치 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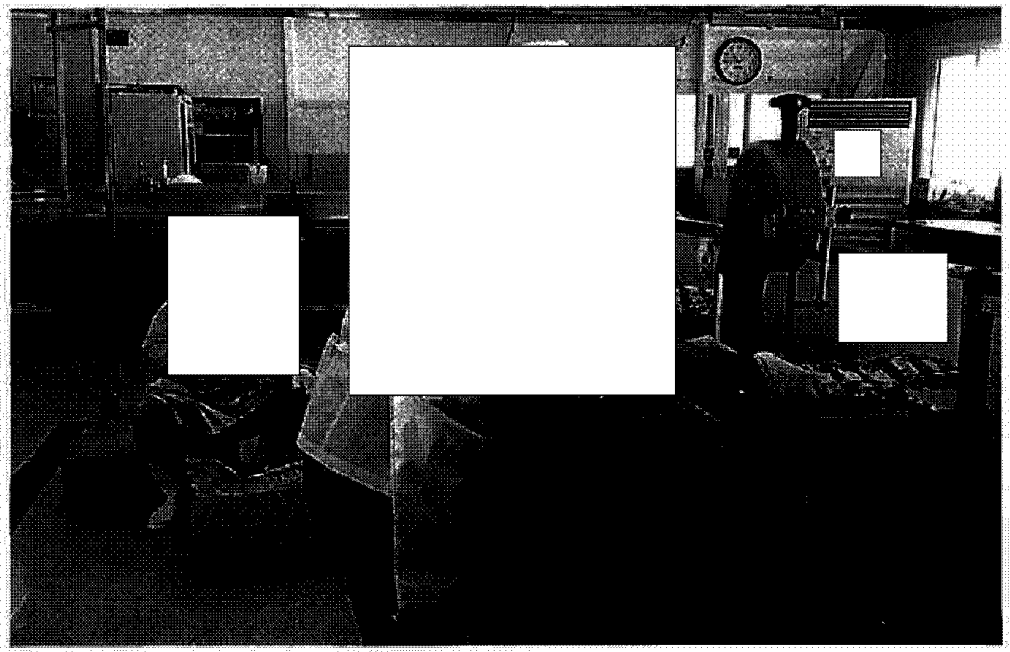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설비 설치 후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부동산 취득 무렵 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6

현재 사진

